

가천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장학금시행세칙

제 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학점은행제 운영세칙 제 8장 36조에 의거하여 장학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장 장학금

제2조(성적우수장학금) ① 재학 중 소정의 학점을 신청, 수강하여 직전학기 취득학점 21학점 이상이고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3.5이상인 각 전공별 재학인원의 10명 이내에 속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장학금 지급액은 1순위-등록금의 30% 범위 내에서 감면, 2순위-등록금의 25% 범위 내에서 감면, 3순위-등록금의 20%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

③ 4순위 이하는 3순위자보다 적은 장학금액으로 산정함

④ 수혜 대상자 기준 : 전공단위 신청 학습자로서, 7과목 이상 수강자

제3조(보훈장학금) ① 보훈법이 정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또는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소지자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감면하고, 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금 포함하여 감면한다. 단, 보훈자녀는 입학 후에는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실점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한다.

② 제1항의 장학금을 신청하는 국가유공자 및 자녀는 보훈지청에서 보훈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이 재학 중 휴학, 복학, 기타의 학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글로벌미래교육원 행정지원실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제4조(새터민장학금) ①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~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~제8조의2, 「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지침」에 의거하여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제출자에게 등록금 전액을 감면하고, 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금 포함하여 감면한다. 단, 입학 후에는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실점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한다.

② 제1항의 장학금을 신청하는 탈북민은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이 재학 중 휴학, 복학, 기타의 학적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글로벌미래교육원 행정지원실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재직자녀장학금) ①본 대학교(학교법인 가천학원)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의 직계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감면한다. 단, 입학 후에는 직전학기 학업성적은 평점평균 2.5이상이어야 한다.

②제1항의 장학금을 신청하는 자는 본 대학교 재직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제1항의 경우에 당해 교직원이 사망, 정년퇴직 기타 이에 준하는 사고로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본 장학금을 이미 지급받아 오던 직계자녀에게는 졸업 시까지 계속 장학금을 지급한다.

제6조(학습장려장학금) ①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또는 아동학전공 학습자 중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재직 중인 학습자에 한하여 등록금의 20%를 감면한다. 단, 7과목 이상 수강자에 한하여 적용되며, 입학 후에는 직전학기 학업성적은 평점평균 2.5이상이어야 한다.

②제1항의 장학금을 신청하는 공무원 또는 어린이집,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학습자는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간부장학금) ①각 전공별 간부로 활동한 학생 중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.5이상인 각 전공별 1명의 학생에게 간부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장학금 지급액은 납부한 수강료의 20%를 지급한다.

③최종 학기에는 간부학생으로 활동하였다 하더라도 간부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8조(공로장학금) ①학술·문화·예술활동 등으로 본교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드높인 공로가 인정되는 자 또는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납부한 수강료의 20%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(단, 신입생 첫 학기는 제외)

②제 1항의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은 공로활동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전공의 주임·지도교수가 심의하여 원장에게 제출한다.

③제 1항의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은 7과목 이상 수강해야 하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.5이상인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체육장학금(입상자장학금)) ①전국대회 이상의 순위가 가려지는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 또는 시도대표 및 국가대표에 선발되어 학교 명예를 드높인 자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.5이상인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제 1항의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은 7과목 이상 수강해야 하며 지급액은 납부한 수강료의 20% 범위 내로 지급할 수 있다.

③시도대항 및 동아리 대회는 제외

제10조(저소득층장학금) ①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 제3조 ②항에 의거 최저생계비 기준 개념으로 생계곤란층 내지 생활이 어려운 4가지(기초생활, 차상위, 차차상위, 기타)계층을 말하나,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한다.

②입학 후에는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취득학점 18학점 및 평점평균 2.5이상이어야 한다.

③제1항의 장학금을 신청하는 자는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장학금 지급액은 등록금의 20%를 지급한다.

제11조(학술지원장학금) ①교원의 연구 활동 및 면학분위기 진작을 위하여 학술지원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주임교수가 추천한 자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취득학점 18학점 및 평점평균 2.5 이상인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. (단, 신입생 첫 학기는 제외)

제12조(고시장학금)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국가고시 및 이에 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가. 5급 이상 국가고시 및 이에 준하는 자격시험 1차 합격자 : 합격한 당해 학기부터 2차 시험 응시 자격이 유지되는 학기까지 등록금 전액 지급

나. 5급 이상 국가고시 및 이에 준하는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: 당해학기부터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지급

다. 7급 국가고시 최종합격자 : 합격한 당해 학기부터 졸업 시까지 등록금전액 지급

라. 9급 이하 국가고시 및 이에 준하는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: 합격한 당해 또는 다음 학기 등록금 전액 지급

②제 1항의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은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
제13조(원장장학금) ①본 교육원 학위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학습자 중 학술·문화·예술활동 등으로 본교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드높인 공로가 인정되는 자 또는 학교발전에 기여 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원장은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제 1항의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은 원장서명이 되어있는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제 1항의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은 7과목 이상 수강해야 하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.5이상인 자에게 총장의 승인을 얻어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가천가족장학금) ①본교(대학원, 구전문대 포함) 졸업생은 등록금의 20%를 감면한다.

②제 1항의 감면혜택을 받는 학생은 당해 학기 7과목 이상 수강해야하며 본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5조(장학금 수혜자격) ① 모든 장학금은 재학생에게만 지급할 수 있으며 보훈장학금, 새터민장학금, 간부장학금을 제외한 모든 장학금 대상자는 7과목 이상 수강자에 한함

② 학비감면을 포함한 장학금 신청자는 붙임의 장학금 서류 등을 반드시 행정지원실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수혜자가 전공변경을 하였을 경우,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현재 소속된 전공에서 장학금을 지급 한다.

④ 장학금이 중복될 때에는 이중수혜를 금지하며(감면포함), 학생이 유리한 것으로 우선 지급한다.

⑤ 학비감면을 제외한 장학금 수혜자 만 25세 미만일 경우 대리인 통장으로 지급한다. 단, 개인사정 있을 시 본인 수령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6조(장학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) 장학금에 대한 지급시기 및 방법은 다음 학기 등록금 납부 시 감면 형식 또는 학기 중 계좌로 이체 한다. 단, 학술지원장학금은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.

제17조(장학금의 지급범위) 교내장학금 지급 범위는 소수과목 수입을 제외한 본 교 육원 학위교육과정 총 수입의 15%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3장 장학생의 선정 및 관리

제18조(장학생선정의 기준) 성적장학금 대상자 선정 시 동점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학생 선정 기준에 있어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, 장학금 선정대상자 중에서 다음에 정한 순위로 선정하여 신청한다.

1. 가계가 곤란한 자
2. 무의탁학생 또는 보호자가 구호대상자인 학생
3. 기타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

제19조(장학금의 반환) 장학금을 받은 후 등록취소(학업중도포기)자는 해당학기 지급받은 장학금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, 학술지원장학금은 기지급된 금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

이 시행세칙은 2018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한다.